



학사학위 운영센터 규정

규정번호	3-1-26
제정일자	2024.4.15.
개정일자	
책임부서/팀·계	교무처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센터는 신안산대학교 학사학위운영센터라 칭한다(이하 “센터”라고 한다).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「학칙」 제26조의3 ①항에 따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조직) ①본 센터의 운영을 위해 센터장이 있으며,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.

- ② 센터장은 본 대학교의 총장이 임명하며,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직원은 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.

제4조(업무) 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위촉 및 운영 업무
2.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신규 인가 신청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
3.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전형 계획 수립 업무
4.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
5.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업무
6.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만족도 조사 및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업무
7.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

제5조(운영세칙) 그 밖에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